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호 의원(찬성자 : 34명)

나. 의안번호 : 제 465 호

다. 발의일자 : 2023. 2. 3.

라. 회부일자 : 2023. 2. 9.

2. 제안이유

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실증설비 설치 등에 따른 하수도점용료를 서울시 자체 방침으로 면제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물산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하수도점용료 감면기준 및 산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 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토

지가격의 100분의 1의 점용료를 부과토록 함.(안 별표4제5호)

나. 서울특별시장이 필요에 따라 타 기관과 협력하여 물재생센터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점용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의 점용료를 부과토록 함.(안 별표4제6호)

다. 안 별표4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점용료 감면 산정기준을 최초 3년은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100분의 8로 함.(안 별표4비고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다. 기타 : 별지,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6조1) 및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물산업진흥조례”)」 제12조2)에 따라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자체 방침³⁾을 근거로 하수도점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 하수도점용료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하수도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하수도조례」에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하수도점용료 감면기준 및 산정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6.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② (생략)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기업 창업·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업이나 사람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 등을 물산업 기술의 실증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2021년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물재생센터 부지 점용 및 점용료 면제, 물순환정책과-15691, 2021.9.1.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별표 4] 제5호, 제6호, 비고2)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65일 기준)		<별표 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1.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6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5.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신설>	<신설>	6. 시장의 필요에 따라 타 기관과 협약하여 수행하는 실증사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5.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8	7. -----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 비고</p> <p>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p> <p>< 계산 예 ></p> <p>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p>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p>※ 비고</p> <p>1. ----- ----- -----.</p> <p>< 계산 예 ></p> <p>(현행과 같음)</p> <p><신설> 2. 제5호 및 제6호의 산정기준 적용 기간은 점용을 위한 설비 등의 설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7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p>

■ 주요골자별 의견

1)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 등 (안 [별표 4] 제5호, 제6호)

- 먼저, 안 [별표 4] 제5호와 제6호는 「물산업진흥조례」 제11조 및 제12조4)에 해당하는 점용과 시장의 필요에 따라 타 기관과 협약하여 수행하는 실증사업에 따른 점용의 경우 하수도점용료를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하는 산정기준을 신설 하려는 것임.

4)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시범사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④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 서울시 하수도점용료의 경우 「하수도법」 제65조⁵⁾와 「하수도조례」 제28조 및 별표4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물순환안전국은 「물산업진흥법」 제16조 및 「물산업진흥조례」 제12조에 따른 물산업실증 연구기업이 물산업 기술의 실증화를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부지를 점용한 경우 자체 방침을 근거로 하수도점용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서 하수도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볼 때 서울시 자체 방침으로 하수도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으로, 금회 본 개정안과 같이 하수도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하수도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 참고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역시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이 재량으로 방침에 근거하여 하수도점용료 면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점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붙임〕 참조)한 바 있음.
- 한편, 본 개정안은 그간 면제해왔던 하수도점용료를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만큼 징수토록 하고 있는데,

5)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먼저, 자체 방침에 의한 현행 면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6)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사항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하수도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면제가 아닌 하수도점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겨짐.
- 다음으로,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7)에서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해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한율을 규정하고 있고,
- 현행 「하수도조례」〔별표 4〕 제4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따른 점용에 대해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과 같이 하수도 점용료를 이에 준하여 법정 하한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물산업 육성·발전 취지에 부합한다 사료됨.

-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2) 감면 적용기간에 따른 점용요금 변동 관련 (안 [별표 4] 비고2)

- 안 [별표 4] 비고2는 안 [별표 4]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 감면 기한을 점용을 위한 설비 등의 설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행 조례 [별표 4] 제5호에 따라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8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마중물 성격의 시범사업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3년 기한을 두고 하한율을 적용하였다가 이후 일반적인 감면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적절하다 사료됨.
- 참고로, 2023.2월 현재 자체 방침에 의해 하수도점용료를 면제 받고 있는 실증사업은 총 4건으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최초 3년 간은 연간 약 655만원의 하수도점용료가, 그 이후부터는 연간 약 52백 42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2023.2월 기준 물재생센터 내 실증사업별 본 개정안에 따른 예상 점용료 징수 내역
(단위 : m², 원)

연번	구분	업체	연구과제명	실증지	점용면적	부지점용기간	조례 개정 시	
							최초 3년간 점용료	3년 이후 점용료
1	시범사업	(주)그레넥스	고농도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smart 디스크형 섬유여과 공정 실용화	탄천	18	'23.6.까지	86,490	692,010
2	시범사업	(주)플라젠	서남센터 협잡물을 이용한 합성가스 생산 실증화	서남	750	'23.6.까지	1,505,100	12,040,900
3	시범사업	삼보과학(주)	미생물 건전성 판단 알고리즘 기반의 실시간 총인, TOC 제어를 통한 스마트 하수 처리	서남	80	'23.6.까지	160,540	1,284,360
4	국가환경	(주)노아에스엔씨	하수처리 공정 자율제어 기능의 통합 가상물리시스템(CPS) 개발	탄천	165	'25.12.까지	4,801,410	38,411,400
계							6,553,540	52,428,670

법률자문 의견서

'22. 11. 25. 법률지원담당관

수 신 : 물재생시설과
참 조 : 팀장 장태욱(3842), 담당 박슬기(3850)
건 명 :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료 관련 질의 (2022-0744)
비 고 : -

법률자문 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송시 우리시에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내부 검토 중인 의견이 공개되어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고 하여 일의적으로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하수도법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이 재량으로 방침등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 점용료 감면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해당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물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점용료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유

○ 질의 배경 및 요지

- 귀 부서에서는 서울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물산업 진흥 조례'라 함) 제12조에 의거 물산업 기술의 실증화를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물산업 실증 연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내 부지를 테스트베드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 등 지원방안을 모색 중임
- 이에 귀 부서에서는 ① 물산업 실증 연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부지에 대한 점용 허가 시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점용료 면제가 가능하다면 물산업 진흥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요청함

○ 자문1항: 공공하수도시설 부지 점용료 면제 가능 여부

-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부서에서는 시장의 재량으로 점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
-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법령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청의 권한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표현 방식으로서 “~할 수 있다”

1) 자문의뢰서 기재사항에 의하면 점용료 감면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지에 관하여도 질의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는 기업이 행정재산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하수도법,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감면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감면이 가능한지에 관한 사안인 것으로 보임.

는 표현을 일의적으로 재량행위나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법제처 2014. 10. 28. 14-0671 법령해석 사례 참조)

- 또한 법제처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거제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정하면서, 법 제57조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하수도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수도법령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12. 28. 의견16-0310 의견제시사례 참조)라고 함

-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고 하여 일의적으로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하수도법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이 재량으로 방침등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 점용료 감면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해당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자문2항: 물산업 진흥 조례를 근거로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물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사람에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 있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2항에서는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술의 실증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점용료 감면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에서 ‘**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조례로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물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점용료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총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

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 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해당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기업 창업·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업이나 사람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 등을 물산업 기술의 실증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우수한 기술을 선정·평가하기 위한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작 성 자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2133-6710 법률지원팀장 김연재 ☎6755 담당 민보현 ☎6758